대·중소기업 상생협의회 및 상생모델 지원 안내

1. 추진배경 및 현황

□ 일본 정부는 **3대 품목 수출규제***를 실시('19.7.4)하고, **백색국가 배제** 각의결정('19.8.2) 및 시행('19.8.28)

* 3대 품목(고순도 불화수소, 포토레지스트, 폴리이미드)에 대해 수출 규제

□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는 소재·부품·장비 강국 도약을 위해 **'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' 발표**('19.8.5)

○ **대·중소기업 상생협의회** 구성·운영하고, **대·중소기업의 분업적 상생모델** 발굴 추진

* 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 '대·중소기업 상생협의회' 설치 → 수요·공급기업으로 구성, 상생협력 프로그램 및 규제개선 건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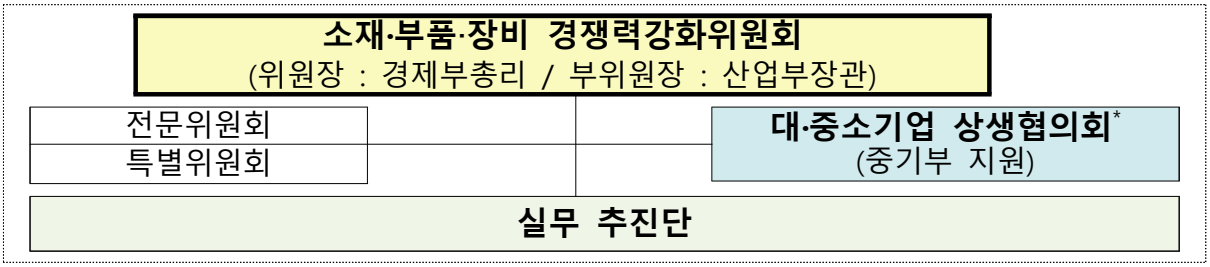

*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이 실무지원(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)

□ **(상생협의회)** 산·학·연 및 관련 협단체 등 **분야별 전문가로 구성**

○ **6개 업종별** 대·중소기업간 **심도깊은 논의**를 위해 분과협의회 설치

- 그간 민간 자율의 **'대·중소기업 상생협의회'** 구성* 및 **6회 회의** 개최

* 출범 및 1차('19.10.16) → 2차('19.11.7) → 3차('20.1.13) → 4차('20.5.6) → 5차('20.7.27) → 6차('21.1.12)

○ **기계·금속, 반도체·디스플레이, 전기전자** 분야 대·중소기업 분업적 상생모델을 발굴하여 **경쟁력위원회 상정·승인**(9개 모델)

* 제3차 경쟁력강화위원회('20.1.22) : 기계·금속 분야 3개 모델 승인
* 제4차 경쟁력강화위원회('20.5.13) : 반도체 분야 3개 모델 승인.
* 제5차 경쟁력강화위원회('20.10.14) : 전기전자 분야 2개 모델 승인
* 제6차 경쟁력강화위원회('21.1.26) : 이차전지 분야 1개 모델 승인

2. 대·중소기업‘상생모델’발굴 추진

□ **(과제 발굴)** 대기업, 중견기업 및 지방청, 기정원, 중기중앙회 등 업종별 협단체를 통한 국산화 우수 중소기업 탐색 및 과제 발굴

○ 수요 대기업을 통해 상생모델 희망기업의 기술력 및 국산화 능력 등을 사전 검증하여 상생모델 발굴

* 기술개발 로드맵 공유(기술사양 제공 등) → 기술개발 → 실증 →신뢰성·양산 평가 → 생산투입 등 공급망 기술단계에 다양한 유형의 협력프로그램 발굴

□ **(선정·지원)** 상생모델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참여 중소기업에게 R&D, 금융,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

○ 수요-공급기업 매칭 과제의 구체성·시장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

* 사업계획서, 경쟁력강화 계획서 등 필요서류는 R&D 과제 기획 전문가를 배정하여 작성 지원(협력재단 전액 부담)

○ 정부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상생협의회에서 선정된 과제 적극 지원

* R&D 지원사업, 정책자금 우대 가점, 규제사항 부처 협의를 통한 해소 등 패키지 지원

** 상생모델 발굴, 기업 육성(스타트업 → 강소기업 → 특화선도기업)의 건전한 협력 생태계 조성

<상생협의회 지원 절차>

대·중소기업 상생모델 발굴	→	대·중소기업 상생모델 추천	→	대·중소기업 상생모델 검토	→	대·중소기업 상생모델 승인
중기부 · 재단		대 · 중소기업 상생협의회		소부장 전문위원회		소부장 경쟁력위원회

<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승인 상생모델 지원사항>

○ 경쟁력위원회가 승인한 협력모델에 대해서는 R&D, 금융, 세제, 인프라, 규제완화 등 집중 지원

○ R&D 등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, 각 소관부처에서 ‘21년 출연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원

○ 제도개선 사항은 관계 부처가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, 규정 개정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지속 점검·관리

○ 해외, 경쟁사 등 보안이 필요한 과제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외비로 지원 (기업명, 과제명 등 공개 안됨)

참고 1 주요 패키지 지원 및 후보사례

가. 협동 연구개발형

❶ (공급기업) A社 / (수요기업) B社, C社 등

① (기술개발)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탄소소재 기술개발 추진 (추경 30억원)
② (규제완화) 공급기업 공장부지 확보 및 에너지 자급 관련 해소 필요
③ (규제완화) 수요기업 신축 공장 산단 입주 및 배출기준 상향 등 필요

❷ (공급기업) D社 /
(수요기업) E社 / (연구기관) F연구소 + G대학

○ (기술개발 등) 산학연 협업으로 자동차 엔진 부품인 피스톨링 내구성 향상 기술개발 ⇨ 공정기술은 수요기업으로 기술이전 (10억원+α 가격), 장비기술은 공급기업 (2억원+α 가격)으로 기술이전

※ 수요기업 E社는 장비 및 공정기술을 일본에서 도입 예정이었으나, F연구소의 국산화 제안으로 상용화에 성공

❸ (공급기업) H社 /
(연구기관) I대학 + J대학 + 나노팹 / (수요기업) K社

○ (기술개발 등) 산학연 협력(산:참여기업, 학:주관기관, 연:인프라 제공 등)을 통한 반도체용 오염방지 소재 기술개발
⇨ 수요기업에 기술이전 (30억원 가격)

❹ (공급기업) L社 / (수요기업) M社, N社

① (기술개발) 2개 수요기업과 공동투자로 탄소섬유 기술개발 추진 (추경 30억원)
② (부담금) 공급기업의 연구개발 과제비 기업출연금 한시 감면
③ (기술지원) 국산 탄소섬유 항공용 소재 DB 및 인증절차 구축

나. 공급망 연계형

❶ (공급기업) O社 (전극) / (수요기업) P社, Q社

① (공급망 연계) 신규 개발기술에 대해 수요기업 (P社) 장비로 성능평가 연계
② (공급망 연계) 신규 개발기술에 대해 수요기업 (Q社) 장비로 성능평가 연계
③ (정책자금) 사업장 인수, 장비 추가구매 등 220억원 규모의 투자에 산은 등 정책자금 지원

❷ 대중소 상생모델 (공급기업) R社 (정밀 스테이지 기술개발) / (수요기업) S社 (구매가능 테스트 진행)

① (대기업 간담회) S社 등이 참석, 제품 및 기술 등을 소개하고 대기업과 연계
② (공급망 연계) 수요기업과 구매연계를 위해 구매, 설비 담당자와의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, 추후 실증테스트 진행 예정

❸ 대중소 상생모델 (공급기업) T社 (폴리 이미드 기술개발) / (수요기업) U社 (양산라인 실증테스트 진행)

① (대기업 간담회) U社 등이 참석, 제품 및 기술 등을 소개하고 대기업과 연계
② (공급망 연계) 수요기업과 구매연계를 위한 연구소에서 실증테스트 진행중이며 이후 실제 양산라인을 통해 실증테스트 진행 예정

❹ 대중소 상생모델 (공급기업) V社 (하모니감속기 기술개발) / (수요기업) W社 (스마트공장 구축지원, 전문인력 파견지원)

① (공정고도화) 제품가공 기술력 향상 및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
② (전문인력 컨설팅) 스마트공장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멘토단 파견 지원
③ (정책자금) 양산시설 증설을 위한 정책자금 연계지원 안내

❺ 대중소 상생모델 (공급기업) X社 (다이아몬드 휠) / (수요기업) Y社

① (정책자금) 양산시설 증설(공장매입)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(예정)
② (대·중소 연계) 시제품 제작 이후 Y社와 구매를 위한 실무협의 진행(예정)

다. 혼합형 (협동 연구개발형 + 공급망 연계형)

❶ (공급기업) 가社 (반도체용 세라믹) / (수요기업) 나社, 다社 등

① (기술개발)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신규 히터기술 개발 추진 (추경 50억원)
② (공급망 연계) 신규 개발한 히터를 수요기업 장비로 성능평가 연계
③ (정책자금) 100억 규모 공장증설 투자에 산은 등 정책자금 지원
④ (규제완화) 공장 신축관련 환경 등 신속한 인허가 처리 지원

❷ (공급기업) 라社, 마社 (NOx 저감기술) /
(연구기관) '바'연구소 + '사'대학 (탈질 촉매기술) / (수요기업) 아社

① (기술개발) 기업의 수요와 연계하여 산학연 협업으로 기술 개발 이후
② (공급망 연계) 민간 대형 선박엔진 실제 테스트 장비로 성능검증 실시
⇨ 수요기업에 기술이전 (18억원+α 가격)

❸ 대중소 상생모델 (공급기업) 자社 /
(수요기업) 차社 (기술수요제시 및 R&D비용지원, 공급계약)

① (기술개발) 대기업이 기술수요를 제시,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
② (자금지원) 대·중기간 공동R&D 비용을 대기업과 정부가 50:50으로 매칭지원
③ (공급망 연계) 실증테스트 등을 거쳐 수요 대기업과 공급계약 체결
* 납품계약실적 : ('19.5월) 45억, ('19.7월) 39억, ('19.9월) 107억

참고 2 대·중소기업 상생모델 및 상생협의회 등 법적 근거

○ **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**('19.9.30 발의, 12.31 공포, '20.4.1 시행)

*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, 제8조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9. "협력모델"이란 소재·부품·장비분야에서 수요기업 사이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수평적 협력, 수요·공급기업 사이의 수직적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.
10. **"상생모델"이란 제9호의 협력모델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분업적 협력체계를 말한다.**

제8조(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)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

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2.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(제5항에 따른 **대·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장을 포함**한다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

⑤ 경쟁력위원회는 대·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(이하 **"대·중소기업상생협의회"**라 한다)로부터 **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에 관한 의견 및 상생모델 등에 대한 건의**를 들을 수 있고,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·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⑦ 경쟁력위원회,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·특별위원회 및 대·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**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** ('20.4.1 시행) * **특별법과 동시 시행**

*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

제14조(대·중소기업상생협의회 실무지원단 설치)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·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**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에 실무지원단을 설치**한다.